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2. 7. 28.

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, 제12조제5항, 제29조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 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	송달 불능 사유	주소
				예정된 처분 제목	처분 사유	서류의 내용		
1	임O훈	74..06.04.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	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연락 두절 및 출석 통지 2회 불응	○ 취업지원 종료 처분에 따 른 의견제출 요청 ○ 종료결정이 있는 날로부 터 3년간 취업지원 신청 제한(3년간 재참여 제한)	보관 기간 경과 만송	광주시 동구 화산로 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: 2022.07.28. ~ 2022.8.12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1과 홍은진(Tel. 062-609-857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